



고용노동부

##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

수신 관내 사업장(기관) 귀하  
(경유)

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

1. 귀 사업장(기관)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.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(4.9.)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, 1.5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3.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도권 외 지역에 관한 방역 조치사항, 기본방역수칙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, 방역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○ 적용기간: 2021. 4. 12.(월) 0시 ~ 2021. 5. 2.(일) 24시

○ 대상지역: 수도권 외 지역(14개 시도)

### 1)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

- 대상시설: 클럽, 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 (무도장 포함) 및 홀덤펍
-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내용: 집합금지

붙임1: 수도권 등\*유흥시설 및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1부

\* 수도권 외 지역 중 2단계 상향한 시도(시·군·구)

- 대상시설: 클럽, 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 (무도장 포함) 및 홀덤펍,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실내스탠딩공연장, 식당·카페, 파티룸
-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2: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### 2)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

- 대상시설: 결혼식장, 장례식장, 돌잔치 전문점, 목욕장업, 영화관, 공연장, PC방,

오락실·멀티방, 실내체육시설, 스포츠경기(관람)장, 실외체육시설, 학원 등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유원시설(놀이공원·워터파크), 이·미용업, 백화점·대형마트, 종합소매업(300㎡ 이상)

-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
\* '학원'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2021.2.15. 안내한 「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역수칙 조정 안내(2.15.)」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

붙임3: 수도권 외 지역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### 3)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

- 대상시설: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
  - 리조트, 호텔, 게스트하우스, 농어촌민박 등
-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4: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### 4) 모임·행사

-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내용: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, 그 외 모임·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
  -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예외 허용
  -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

붙임5: 수도권 외 지역 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### 5) 종교시설

- 대상시설: 종교시설
-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  - \* '종교시설'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,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안내한 「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역수칙 조정 안내(2.15.)」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

붙임6: 수도권 외 지역종교시설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### 6) 기타시설

- 대상시설: 카지노(외국인 카지노 제외), 경륜·경마·경정, 미술관·박물관, 도서관

관, 키즈카페, 전시회장·박람회장, 마사지업·안마소, 국제회의 시설

-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7: 수도권외 지역 기타시설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#### 7) 고위험사업장

- 대상시설: 콜센터, 물류센터
-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8: 수도권 외 지역고위험사업장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#### 8) 교통시설

- 대상시설: 대중교통시설(국제항공편 제외)
-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9: 수도권 외 지역대중교통시설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부

#### 9) 국공립시설 등

-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·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운영
  - 경륜·경정·경마장·카지노는 수용 가능인원의 20% 이내 제한 원칙, 이외시설(체육시설 등)은 수용 가능인원의 50%로 제한 원칙
  - \* 경륜, 경정, 경마, 카지노 외의 시설은 부처·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, 방역 관리상황,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

#### 10) 사회복지이용시설

-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 전환 등 방역강화
  - \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

#### 11) 직장근무

- 공공기관은 기관별·부서별 적정비율(예: 전 인원의 1/3) 재택근무 등 실시
  - \* 치안, 국방, 외교, 소방, 우편, 방역, 방송, 산업안전,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
  -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
  - 회식·대면회의·출장자제

○ 민간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형태 개선 권고

붙임: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. 끝.

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장



근로감독관

황윤훈

전산사무관

전결 2021. 4. 14.

김용태

협조자

시행 산재예방지도과-2594 (2021.04.14) 접수

우 54076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5길 44 (조촌동 852-1 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) / <http://gunsan.moel.go.kr>

전화번호 063-450-0534 팩스번호 063-450-0593 / [hwang0113@korea.kr](mailto:hwang0113@korea.kr) / 비공개(7)

"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"